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6.10.22.)

조례·일반의안
검 토 보 고 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1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전략담당관	**1**
2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관광진흥과	**13**
3	거창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보건정책과	**23**
4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34**
5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45**
6	(재)거창군장학회 2027년 출연안	인구교육과	**53**
7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61**
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경제기업과	**77**
9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87**
10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96**
11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	**106**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재 무 과	**113**

의안번호 제2026 - 141호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6. 10. 19.

나. 발 의 자: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11명)

(이홍희, 표주숙, 하병오, 김미영, 신중양, 구교천, 강우용, 김홍섭, 신재화, 박수자, 백종숙)

다. 회부일자: 2026. 10. 19.

2. 제안이유

○ 정부의 기본소득 공모 사업에 대비함과 동시에 거창형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소득 및 지원대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안 제3조~제6조)

다. 주민 의견 수렴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안(안 제7조~제8조)

라.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 및 주요 사항 심의(안 제9조~제14조)

마. 재원 확보, 성과평가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전략담당관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1.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거창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본소득의 지급,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조항별 검토결과

○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본소득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대상·금액·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기본계획 수립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급 대상과 기준, 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행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절함.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성과평가 계획 등을 주요 평가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에, 사업 추진 시 단순한 지급 실적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증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의 설계가 필요함.

○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기본소득 지급의 신청·결정 및 지급, 지급 중지·환수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실제 사업 시행 시에는 지급 대상자의 거주 요건과 자격 확인, 지급 중지 및 부정수급 환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급 과정의 혼선과 행정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3. 종합검토결과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2026년 추경 포함 3,047억 원에서 2027년 1조 1,658억 원으로 확대되고, 사업 대상 지역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현행 대비 18개 군이 추가되는 규모임.

○ 이는 전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50.7%에 해당되며, 국비 부담비율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정책방향 또한

농촌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는 정책모델로 확대함.

○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을 살펴보면, 미참여 군을 대상으로 **2027년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12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기본**으로 하며, 상품권 발행·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과 그 밖의 추가 소요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군비와 추가 운영비를 고려하여 재정 부담을 산정하고, 도비 확보 가능성과 중장기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공모 선정은 조례 제정 여부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활성화 방안, 정책 연계성 및 주민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됨.

○ 거창군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거창사랑상품권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돌봄과 교육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 진단**을 통해 **'거창형 모델'**을 만들고,

○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등 기존 정책의 성과와 지역 여

건을 공모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거창군의 강점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본소득은 매월 반복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얼마를 주느냐' 보다는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시범사업 기간의 성과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붙임 1 비용추계서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기본소득 지원사업 지원금

나. 관련 조문: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안 제5조)

다. 지급기준 : 군민 1인당 분기별 100,000원 지급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세출	1차 연도 (2027년)	2차 연도 (2028년)	3차 연도 (2029년)	4차 연도 (2030년)	5차 연도 (2031년)
기본소득 지급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기본소득 지급

가. 군민 1인당 분기별 100,000원 지원

나. 거창군 인구 59,000명 기준

연도	합계	산출근거	비고
1차 연도 (2027년)	**24,000 백만원**	**59,000명 × 100천원/분기 × 4분기 = 23,600백만원 상품권발행운영 수수료 236백만원 × 0.9% = 212백만원 관리시스템,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등 = 188백만원**	
2차 연도 (2028년)	**24,000 백만원**	**59,000명 × 100천원/분기 × 4분기 = 23,600백만원 상품권발행운영 수수료 236백만원 × 0.9% = 212백만원 관리시스템,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등 = 188백만원**	
3차 연도 (2029년)	**24,000 백만원**	**559,000명 × 100천원/분기 × 4분기 = 23,600백만원 상품권발행운영 수수료 236백만원 × 0.9% = 212백만원 관리시스템,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등 = 188백만원**	
4차 연도 (2030년)	**24,000 백만원**	**559,000명 × 100천원/분기 × 4분기 = 23,600백만원 상품권발행운영 수수료 236백만원 × 0.9% = 212백만원 관리시스템,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등 = 188백만원**	
5차 연도 (2031년)	**24,000 백만원**	**59,000명 × 100천원/분기 × 4분기 = 23,600백만원 상품권발행운영 수수료 236백만원 × 0.9% = 212백만원 관리시스템,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등 = 188백만원**	

작성자 전략담당관 옥진숙

붙임 2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 공고 발췌**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23호)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 등에 따라,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 유도를 위해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신규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 개요 ※ 국회 예산 심의 등에 따라 예산 규모 및 일부 사업 내용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군***

* 인구감소지역 지정('21.10) 69개 군 중 시범사업 기 추진 중인 17개 군 제외

○ **(사업 내용)** 일정 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지방정부 자체 재원으로 추가지급 가능

○ **(사업 기간) '27년 시범사업** 시행('27.1월~'27.12월, 12개월)

○ **(예산)** 인당 월 15만 원 지급 기준으로 **'27년** 시범사업 **총사업비**는 **약 2조 3,305억 원**(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

○ **(사업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18개 군 내외** 신규 선정

* 약 76.1만 명 지급 가능 규모

※ 시범사업 추진 중인 17개 군을 포함하여 35개 군 수준으로 확대 예정

2. 사업 유형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형·지역재원창출형**으로 구분

※ **일반형 참여 후 군비 부담액 비중에서 지역재원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자동 참여**

- **(일반형)**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발전지수*가 낮아**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활력 촉진이 필요한 군 지역**

 * 지역발전지수(RDI): 생활서비스·지역경제력·여유공간·주민활력 등 부문별 분석을 통해 지역별 발전 수준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지역발전지수 산정(KREI, 격년 조사)

- **(지역재원창출형)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군비 부담액의 20% 이상)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군 지역**

 * (예시)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화하여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지역 등

3. 공모 계획

○ **(제출 기간) '26. 10. 20.(화) 9시 ~ 11. 3.(화) 18시**

 * 제출 기간 엄수,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된 서류는 불인정

○ **(제출 서류)** 공모 신청서, 예비계획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증빙자료 등

○ **(공모 방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등을 **사전 협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계획 수립** 후 신청

- **광역지방정부**(시·도)는 기초지방정부(군)의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취합·검토 후 제출 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공문은 농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를 수신자로 하고 전자결재 이용, **공모 신청서** 및 **지방비 확보 확약서**는 **스캔 첨부**(단체장 직인 필수) 제출*

* 단체장 부재 시 권한대행 부단체장 직인으로 대체

- 모든 제출 대상 서류는 **신청양식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hyeonsseon@korea.kr)

○ **(평가 계획)** 지방정부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예비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 및 발표 평가** 실시(발표 → 질의응답)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 신청 건수가 1.5배수(27개 군) 이상인 경우 서류 평가를 통해 상위 27개 군을 선정하고, 이에 한정하여 발표 평가 진행

- **평가 점수**는 위원들의 **평균값**을 최종 점수로 하되,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최고·최저 점수**는 **배제**

○ **(선정 계획)** 평가 결과 **합산 점수 고득점**순으로 **국비 예산 범위**(12개월 6,847억 원, 약 76.1만 명 규모) **내**에서 **18개 군 내외 선정**

* 합산 점수 동점 시에는 가점을 제외한 점수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 그럼에도 점수 동일 시에는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 순으로 해당하는 점수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

- 평가결과 합산한 점수(가점 제외)가 **60점 미만**이거나 **적격성 지표 미충족,** 동일지표 '**매우 미흡**' 평가 3개 이상 시 선정 대상에서 **배제**

4.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2026. 10. 20.(화) ~ 11. 3.(화)

○ 서류·발표평가: 2026. 11. 4.(수) ~ 16.(월) ※ 변동 가능

○ 선정 결과 발표: 2026. 11. 19.(목) ※ 변동 가능

5. 관련 문의

○ 담당자* **이메일**(온메일) 또는 **유선 연락**

* 농촌소득정책과 현선경 주무관(hyeonsseon@onmail.go.kr, 044-201-2818)

붙임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 국회 예산 심의 등에 따라 예산 규모 및 일부 사업 내용 변경 가능

1 시범사업 내용

□ **(지원내용)**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

○ **(사업기간)** **'26~'27년**(2년간) * '26년 국비 예산(추경 포함) : 304,705백만원

○ **(대상지역)** 전남광주곡성·구례·보성·신안, 경기연천, 강원정선·화천, 충북보은·옥천, 충남청양, 전북진안·무주·장수·순창, 경북청송·영양, 경남남해(8개 도, 17개 군)

* 밑줄은 '26.6.11일 추가 선정지역(7개 군)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지급절차)** **신청**(상시, 최초 1회 신청) → **자격 확인**(매월 1일~20일경, 읍·면) → **지급 대상자 결정**(매월 20일경, 읍·면위원회) → **지급**(매월 말, 군)

□ **(사용지역)** 거주 지역 내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생활권**으로 지정하여 사용 가능

□ **(사용처)** 중심지(읍)·특정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되, **생활권 형태별**로 사용처 설정

○ **(읍) 모든 면**에서 사용, **주유소·편의점·선택택시** 합산 최대 **5만원*** 사용 가능

* 시범사업 기간 중 제한적으로 허용된 도서 지역 읍 하나로마트 및 면 하나로마트 사용금액 포함

○ **(읍과 하나의 생활권인 면) 모든 면**에서 사용, **읍 내 가맹점** 및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선택택시** 합산하여 최대 **5만원** 사용

* 면 하나로마트가 지방정부와 MOU를 통해 상생활동, 사회적 기부를 하는 경우 조건부 허용

** 읍과 인접하고 인구1,200명&가맹점25개소 미만인 면의 경우 2만원 추가 가능

○ **(읍과 별개의 생활권인 면) 모든 면**에서 사용, **중심지 집중 업종***은 제한 없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선택택시**는 합산하여 최대 **5만원** 사용

* (필수5개)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 (최대2개) 서점, 문구점, 출산·육아용품점, 세탁소, 생활체육시설[군직영]

□ **(사용기한)** **읍** 주민은 지급월의 익월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면** 주민은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설정

□ **(예산)** 인당 월 15만 원 지급 기준으로 **'27년 시범사업 총사업비**는 **약 2조 3,305억 원**(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

* '27년 신규 공모 예정인 18개 군 총사업비는 약 1조 3,694억 원

○ 국비 보조는 **기본소득 지급액**(인당 월 15만 원 중 7.5만 원)에 **한정**

○ **지방비**는 **시·도 및 군**이 **5:5**로 부담하고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인당 지급액**(월 15만 원 이상) **확대** 가능

○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비용***, **지역별 성과평가**를 위한 **실태조사**(필요 시) 및 당초 **계획 대비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정부 부담**

* 시스템 구축비, 카드 발급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읍·면 주민 설명회 등

2 사업 유형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형·지역재원창출형**으로 구분

※ 일반형 참여 후 군비 부담액 비중에서 지역재원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자동 참여

○ **(일반형)**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발전지수***가 낮아**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활력 촉진이 필요한 군 지역**

* 지역발전지수(RDI): 생활서비스·지역경제력·여유공간·주민활력 등 부문별 분석을 통해 지역별 발전 수준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지역발전지수 산정(KREI, 격년 조사)

○ **(지역재원창출형)**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군비 부담액의 20% 이상)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군 지역

* (예시)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화하여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지역 등

참고 |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69개 '군(郡)' 중 시범사업 실시 중인 17개 군 제외 **52개 군**

※ 인구감소지역 지정 : 시·군·구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 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 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이 지정 고시

시·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郡 한정, 현재 시범사업 실시 군 제외)
전남광주(12개)	강진군, 고흥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대구(1개)	군위군
인천(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1개)	가평군
강원(8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3개)	괴산군, 단양군, 영동군
충남(5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3개)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경북(8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경남(9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0개 시도 52개 군	

관련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2026 - 119호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6. 10. 12.

나. 발 의 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표주숙, 하병오, 김미영, 신중양, 구교천, 강우용,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백종숙)

다. 회부일자: 2026. 10. 13.

2. 제안이유

○ 기존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현재의 관광 환경과 지역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야간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안 제4조)

다. 전문가 의견 반영 (안 제5조)

라. 야간관광 콘텐츠의 발굴 및 지원(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바.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안 제8조)

사. 성과관리(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관광진흥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30. ~ 10. 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현재의 관광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야간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과 체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구체화, 안 제5조의 전문가 의견 청취, 안 제6조의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 안 제7조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의 재정 지원 및 사업 위탁, 안 제9조의 성과관리 규정 마련 등임.

나. 주요 조항별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야간관광을 단순한 경관 조성이나 야간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관광자원과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서비스 및**

지역상권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특히, 숙박·음식점·전통시장 등과의 연계를 명시하여 관광객 유입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안 제4조는 야간관광 거점 및 명소의 발굴·육성, 야간경관·조명·미디어 활용,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정 관광지나 개별 사업을 조례에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않아 향후 새로운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함.

○ 안 제5조는 야간관광 거점 조성, 주요 관광자원의 야간 활용 및 주요 경관·조명·미디어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야간관광의 경우 경관 연출과 콘텐츠 기획, 관광객 동선 및 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사업 초기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역의 특색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공모 등을 통해 발굴·지원하고, 관광사업자·지역 상인·주민·문화예술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 주도의 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원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

하고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상권 이용을 연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8조는 야간관광 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업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를 통해 사업의 성격과 전문성에 따라 적절한 수행 주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야간관광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추진 및 개선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업의 시행 여부에 그치지 않고 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후속 사업에 반영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야간관광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관광기본법」 제6조, 「관광진흥법」 제48조 등 관계 법령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야간관광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사업성과를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별 재원 확보와 군비 부담, 시설 운영·유지관리 계획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추진 이후에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비용추계서**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안 제4조)

 나. 야간관광 콘텐츠의 발굴 및 지원(안 제6조)

 다.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안 제8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합계
합계	1,800	178	6,304	12,600	12,600	33,482
국비	900	-	3,120	6,240	6,240	16,500
도비	270	-	936	1,872	1,872	4,950
군비	630	178	2,248	4,488	4,488	12,032

3.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수승대 야행관광 조성사업('26년) : 1,800백만원

 나. 감악산 힐링(천문)타워 기본계획 용역('27년) : 100백만원

 다. 천문관광 프로그램 운영('27~30년) : 438백만원

 라. 감악산 힐링(천문)타워 조성 사업('28~30년) : 31,144백만원

작성자 관광진흥과장 임 양 희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

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 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의안번호 제2026 - 120호

거창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6. 10. 12.

나. 발 의 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표주숙, 하병오, 김미영, 신중양, 구교천, 강우용,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백종숙)

다. 회부일자: 2026. 10. 13.

2. 제안이유

○ 거창군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의 지원 (안 제3조)

다. 운영실태조사 등 (안 제4조)

라. 홍보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보건정책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30. ~ 10. 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본 조례안은 거창군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야간·휴일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군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참여기관 지원, 안 제4조의 운영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 안 제5조의 홍보에 관한 사항임.

나. 주요 조항별 검토의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3조는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의 야간·휴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소아 진료 수요와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는 외부 재원만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군비 부담을 포함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과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와 제5조는 참여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시책을 홍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원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군민의 이용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2010년 초 소아과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으로 인해 경증 소아 환자까지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몰리게 되면서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나타남.

○ 이에 대구시에서는 야간, 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전문의료진에게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12년 7월 전국 최초로 '달빛 어린이병원'을 도입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8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됨.

○ 10년이 지난 2025년 11월 기준 전국 130개소가 지정되어 운영중이며, 그 중 서울·경기·인천이 60개소로 46.1%를 차지하고, 경남은 11개소가 운영, 거창군은 중앙메디컬 병원이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음.

☞ 달빛어린이병원 전국 지정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0	16	8	5	7	4	7	3	1	37	3	5	5	6	4	4	11	4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라목의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따른 자치사무이며, 같은 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비용추계서**

「거창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의 지원(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합계
합계(100%)	720	720	720	720	720	3,700
기금(50%)	360	360	360	360	360	1,850
도비(15%)	108	108	108	108	108	555
군비(35%)	252	252	252	252	252	1,295

3.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 720백만원

4. 비용추계의 전제

 가. 2026년 사업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작성자 보건정책과장 이 호 현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34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 「약사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

[헌법불합치,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2026 - 121호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6. 10. 1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10. 13.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의무화하며, 부정용역 수행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과 용역 결과물의 품질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역심의위원회 기능·구성·임기·해촉·제척 등을 정비함(안 제3조, 제5조~제10조)

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리 신설함(안 제14조의2)

다. 법령 인용조문 및 재기재사항 등 정비함(안 제15조·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2.~10.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용역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피 의무 위반 시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연구부정행위 또는 용역 결과가 불량한 경우의 판정 및 후속 조치에 관한 규정인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것임.

나. 주요 조항별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 결과의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용역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나, 해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회피 의무 위반 및 해촉 사유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14조의2는 **연구부정행위와 용역 결과 불량**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두 **사유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표절이나 자료의 허위 작성·조작 등 연구부정행위,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부실한 용역 수행, 단순한 연구성과 미흡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용역 결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책적 활용도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는 일정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실한 용역 수행 등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연구부정행위의 직접적인 판단기준은 아니지만, 용역 수행자의 책임과 위반행위의 정도를 구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안 제14조의2제2항의 소속기관 통보 및 불이익 조치는 적용 대상과 범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계약법령에 따른 제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계약상 제재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판정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처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부정행위 및 용역 결과 불량의 판단기준과 후속 조치의 근거·절차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19.] [대통령령 제3633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삭제 <2023. 8. 16.>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2.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 삭제 <2022. 9. 20.>
 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라목·마목·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3. 7.>

1.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2.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⑫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⑮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6. 25.]

의안번호 제2026 - 122호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6. 10. 1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10. 13.

2. 제안이유

○ 거창군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17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 「청년기본법」 제20조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1,400백만원 확보(지방소멸대응기금)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3.~10.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안 개요

❍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의 주거 선택지를 확대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나. 주요 조항별 검토의견

❍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창업 성장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삶의 질 제고 등이며 이를 위해 **청년 예산을 26년 대비 53.5%가 증액된 43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0~34세)까지 정부가 최대 1억 9,582만 원 지원

❍ 세부적으로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50% 이상을 청년에게 공급**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신규 공급**과 **청년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함.

❍ 이에, 우리군에서도 발빠르게 청년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는 9세대를 시작**으로 **매년 세대수를 확대**할

계획임. 또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 관련 증권(보증보험), 전세권 설정 및 권리분석 용역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다만, 임차주택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구조인 경우 임대인의 전대 동의 등 계약상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와 주택 관리에 따른 재산상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임대차계약, 입주자 선정, 보증금 관리, 시설 유지보수 및 민원 대응 등에 따른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직접 운영과 전문기관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탁 시 업무 범위와 비용, 관리·감독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함.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보호와 계약상 권리관계 등 재산상 위험을 면밀히 관리하고, 사업 규모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붙임 **비용추계서**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전세임대주택 지원

나. 관련 조문: 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총계	1차 연도 (2026년)	2차 연도 (2027년)	3차 연도 (2028년)	4차 연도 (2029년)	5차 연도 (2030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기초계정)	16,000	1,400	2,600	3,000	4,000	5,000
군비	125		125			
세대수	100	9	16	18	25	32

※ 리모델링비는 내년 시행 후 추가확보 등 결정계획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지방소멸대응기금

가. 전세보증금: 150백만원 x 100세대 이상 = 15,800백만원

나.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등 사업 운영비: 200백만원

2. 군비: 리모델링비 125백만원

3. 2026년도 예산 추계: 9세대 이상

가. 전세보증금 1,380백만원

나. 중개수수료 등 20백만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28호, 2026. 2. 5.,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청년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6. 4. 9.] [법률 제21542호, 2026. 4. 9., 일부개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6. 4. 9.>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4.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6. 8. 1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53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⑤ (생 략)

⑥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 및 제5항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제외한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
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 및 제5항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제외한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시·군·구에 배분되는 금액은 시·군·구가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 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 인구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⑧ 시·군·구의 매 회계연도 최대 배분금액은 제6항 각 호의 산술평균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며, 산술평균금액은 다음과 같다.

산술평균금액 =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총 배분금액 ÷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군·구 수

제9조(최종 배분금액 확정) 조합은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분금액을 확정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안번호 제2026 - 130호

(재)거창군장학회 2027년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6. 10. 1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10. 13.

2. 제안이유

○ 교육여건 개선 및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거창군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 요

1) 근 거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 출 연 금 : 1,3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편성액	2027년 요구액	증감
계	3,394	1,395	△1,999
장학기금 확대	2,250	-	△2,250
장학사업 추진	665	665	-
한국승강기대학교 대학생 등록금 지원	169	420	251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250	250	-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	60	60	-

3) 내　　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합　　계	1,395		
장학사업 추진	665	소　　계	
	200	중·고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지원	
	175	초·중·고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160	초·중학교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80	저소득층 중·고생 필수과목(국·영·수) 학원비 지원	
	50	중학교 진로·진학 지도사업 지원	
등록금 지원	420	한국승강기대학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100% 지원	
	250	거창군 출신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100만원 한도 지원	
영어사이버스쿨	60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 영어수업 지원	

나. 부서의견

1)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학사업 추진 필요

2)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인구 유입 도모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필요

3) 승강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인력 양성과 관내 대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승강기대학교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필요

4) 외국어 학습환경 접촉 기회 부족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및 영어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참고1 참조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3)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4)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제4조, 제7조

5)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나. 거창군장학회 현황 : 참고2 참조

다. 2026년 거창군장학회 주요사업 현황 : 참고3 참조

5. 검토의견

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본 출연안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재)거창군장학회에 **2027년도 출연금 13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장학사업 6억 6,500만 원, 한국승강기대학교 대학생 등록금 지원 4억 2,000만 원, 거창군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2억 5,000만 원,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 6,000만 원 등임.

○ **전년도 출연액 33억 9,400만 원보다 19억 9,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장학기금 확대를 위한 출연금 2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임.

나. 주요 검토 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는 거창군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05년 12월 설립**된 이래 장학생 선발,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원어민 교사 지원, 영어캠프 지원, 진료체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거창군장학회 2025년 말 기준 자산은 204억 6,900만 원이며, **2026년 장학기금 200억 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제시**됨. 최근 4년간 기금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해 온 만큼, 향후에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 관리를 통해 장학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연간 1억~2억 원 수준의 기부금이 모금되고 있는 만큼, **지역 기업·단체·출향인사 등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기부금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체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출연금은 전년 1억 6,9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으로 2억 5,100만 원 증액**됨.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승강기 관련 학과 학생의 등록금 100% 지원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원 대상과 비율, 수혜 인원 및 소요 예산을 구체화하여 지원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출연안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1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4. 1.>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제4조(등록금 지원) 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업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등록금의 지원) ① 군수는 군 출신 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 업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고2 (재)거창군장학회 현황

<table>
<tr><td rowspan="2">설립근거</td><td colspan="3">-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d>전화번호 : 055-940-8813</td></tr>
<tr><td colspan="3"></td><td>홈페이지 :
www.gcdream.kr</td></tr>
<tr><td>주요연혁</td><td colspan="2">- 설립연도 : 2005. 12. 16.
- 장학기금 200억원 달성 : 2026년</td><td>기관형태
(출자, 출연)</td><td>출연기관</td></tr>
<tr><td rowspan="2">직원현황
('26. 9.
현원 기준)</td><td colspan="2">계</td><td colspan="2">정규직</td><td>비정규직</td></tr>
<tr><td colspan="2">0명</td><td colspan="2">0명</td><td>0명</td></tr>
<tr><td rowspan="18">임 원
('26. 9. 기준)</td><td>직 책</td><td>성 명</td><td colspan="2">주요경력</td><td>임 기</td></tr>
<tr><td>이사장</td><td>이홍기</td><td colspan="2">거창군수</td><td>재직기간(당연직)</td></tr>
<tr><td>상임이사</td><td>안철우</td><td colspan="2">거창문화원장</td><td>2년('25.12.26.~'27.12.25.)</td></tr>
<tr><td>이 사</td><td>신재국</td><td colspan="2">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td><td>재직기간(당연직)</td></tr>
<tr><td>이 사</td><td>박현보</td><td colspan="2">거창신협 이사장</td><td>2년('24.12.24.~'26.12.23.)</td></tr>
<tr><td>이 사</td><td>신양건</td><td colspan="2">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장</td><td>2년('25.12.26.~'27.12.25.)</td></tr>
<tr><td>이 사</td><td>박노해</td><td colspan="2">거창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td><td>〃</td></tr>
<tr><td>이 사</td><td>강택섭</td><td colspan="2">거창군상공협의회장</td><td>〃</td></tr>
<tr><td>이 사</td><td>김일구</td><td colspan="2">(사)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지부장</td><td>〃</td></tr>
<tr><td>이 사</td><td>박진양</td><td colspan="2">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장</td><td>2년('24.12.24.~'26.12.23.)</td></tr>
<tr><td>이 사</td><td>최성기</td><td colspan="2">거창군새마을회장</td><td>〃</td></tr>
<tr><td>이 사</td><td>신연숙</td><td colspan="2">평생학습활동가 회장</td><td>〃</td></tr>
<tr><td>이 사</td><td>김은애</td><td colspan="2">두나미스 교육연구소 대표</td><td>2년('25.12.26.~'27.12.25.)</td></tr>
<tr><td>이 사</td><td>김득철</td><td colspan="2">거창일반산업단지협의회장</td><td>〃</td></tr>
<tr><td>이 사</td><td>양희용</td><td colspan="2">거창군학원연합회장</td><td>〃</td></tr>
<tr><td>감 사</td><td>안영길</td><td colspan="2">법무사안영길사무소 대표</td><td>〃</td></tr>
<tr><td>감 사</td><td>최인식</td><td colspan="2">행정동우회 거창군분회 부회장</td><td>2년('24.12.24.~'26.12.23.)</td></tr>
<tr><td>주요기능</td><td colspan="5">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td></tr>
<tr><td colspan="2">자본금
(단위:백만원)</td><td colspan="2">17,760
(직전연도말 기준)</td><td>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td><td>3,394
(직전연도말 기준)</td></tr>
<tr><td rowspan="4">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td><td>연 도</td><td>2024</td><td>2025</td><td>2026</td><td rowspan="4">재무현황
(백만원)
'25. 12. 31.기준</td></tr>
<tr><td>예산액</td><td>5,193</td><td>5,991</td><td>6,483</td><td>자산</td><td>20,469
(자산 총액)</td></tr>
<tr><td>지자체
지원액</td><td>3,695</td><td>3,394</td><td>3,394</td><td>부채</td><td>2,724
(부채 총액)</td></tr>
<tr><td colspan="3"></td><td>자본</td><td>17,760
(자본금 총액)</td></tr>
<tr><td rowspan="2">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25. 12. 31.기준</td><td colspan="2">총수익</td><td colspan="2">총비용</td><td>당기순이익</td></tr>
<tr><td colspan="2">1,825</td><td colspan="2">1,266</td><td>583</td></tr>
</table>

참고3 2026년 (재)거창군장학회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계	출연금	장학회	
		1,817,060	**1,144,000**	**673,060**	
1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200,000	200,000	-	중·고등학교 해외 소재 자매결연 학교와 교류 지원(12개교)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230,000	230,000	-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등 지원(10개교, 원어민교사 4명)
3	**특기적성·특색학교 프로그램 지원**	100,000	100,000	-	초·중학교 예체능 및 특색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21개교, 34개 프로그램)
4	**두드림(DO DREAM) 사업**	80,000	80,000	-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국·영·수 학원비 지원(100명, 10만원/월, 8개월)
5	**진로·진학 지도사업**	50,000	50,000	-	중학교 진로 지도, 진로 체험 지원 (6개교, 학생 수 비례 지원)
6	**학원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5,000	5,000	-	전문강사 초청 학원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아동학대 방지 등) 강사료 지원
7	**한국승강기대학교 대학생 등록금 지원**	169,000	169,000	-	본인부담 등록금 50% 한도 지원 ('26년 1학기 111명, 84,430천원 지원)
8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500,000	250,000	250,000	본인부담 등록금 100만원 한도 지원 ('26년 1학기 117명, 107,551천원 지원)
9	**영어 사이버스쿨**	60,000	60,000	-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100명, 6개월)
10	**장학생 선발**	171,500	-	171,500	초·중·고·대학생 7개 분야, 145명 선발 (고교 재학, 수능 우수, 예체능 장학생 등)
11	**창의·융합 영재캠프 지원**	22,000	-	22,000	거창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여름방학 중 합숙·체험형 영재캠프 지원
12	**고교-대학 브릿지 진로체험교육**	15,000	-	15,000	대학교 방문을 통한 진로 체험, 전공 탐색 등 고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13	**학생 생활환경 개선 지원**	165,000	-	165,000	농어촌 자율학교 등 고교 환경개선 지원(거창여고, 거창고, 대성고, 아림고)
14	**진주교대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원**	24,560	-	24,560	남상초 진주교대 교육실습학교 선정에 따른 기자재 및 실습생 경비 지원
15	**청소년 자치캠프 지원**	9,000	-	9,000	중학생 학생회 자치캠프 개최 지원 (3회)
16	**수능 수험생 응원키트 지원**	16,000	-	16,000	수험생 격려를 위한 응원키트 배부 (고3 학생 750명)

의안번호 제2026 - 123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6. 10. 1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10. 13.

2. 제안이유

○ 미래첨단산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투자유치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정비하여 우수 기업의 관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래첨단산업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도비 지원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사업 정비 및 신설(안 제14조·제14조의2·제15조)

1) 도외기업의 관내 이전,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정비

2) 신설·증설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신설

다. 미래첨단산업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특례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1)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 지원 비율에 추가 지원

2) 투자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라. 산업단지 업종 변경 지원사업 신설(안 25조의 3)

마. 이중지원 금지 보완(안 제38조)

1) 현행: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개정: 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경우 그 선행투자가 정산을 완료하기 전에는 중복지원 불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29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 3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8. 26.~9. 1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의 관내 이전과 신설·증설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첨단산업 및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종변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이전기업 및 신설·증설 투자기업 지원 규정 정비,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기준 변경, 미래첨단산업 및 비영리법인

지원 신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종변경 등에 대한 지원 신설, 중복지원 제한 규정 변경 등임.

나. 주요 조항별 검토의견

❍ 안 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 이전기업 및 신설·증설 투자기업 지원은 이전기업 지원한도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신설·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경상남도 조례·규칙에 따른 지원기준을 반영하고, 기업별 지원요건과 한도를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취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4.14., 2025. 4. 7., 2026.1.2., 2026.2.26.>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10명 이상)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5.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입지·설비 투자금액의 각각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

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2026.1.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8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6.1.2.>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 한도로 12개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금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1.2.>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초과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12개월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1.2.>

제18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본조신설 2020.12.31.>)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4.14., 2024.2.15., 2026.1.2., 2026.2.26.>
1. 기업이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3. 설비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지원 업종에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5. 별표 3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6.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존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매각하더라도, 기존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3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여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가분에 대하여 별표 3의4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별표 3의3과 같이 하며,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1.9.30., 2026.1.2.>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 안 제15조는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을 경상남도에서 정한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기준을 거창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기업에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경상남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취지에는 문제가 없으나, 규칙에 지원요건과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이 명확히 반영되는지,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거창군의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4.2.15., 2026.1.2.>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개정 2021.9.30.>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이전 후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1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3의4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30., 2023.3.30., 2024.2.15.>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
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기준일 적용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상시고용인원이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⑥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안 제2조제6호 및 제25조의2제1항의 **미래첨단산업 지원**은 경상남도에서 도입한 미래첨단산업 지원제도를 거창군에도 적용하여, 해당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기존 지원비율보다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추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임.

❍ 안 제2조제7호 및 제25조의2제2항 **비영리법인 지원**은 경상남도 조례와 같이 **보건업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투자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상남도 조례에서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거창군에 도입하려는 취지임.

❍ 다만, 경상남도 조례는 지원 여부를 도지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거창군에서는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요건·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할 것임.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기존 의료·복지 분야 보조사업과의 중복지원 방지방안이 규칙에 마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서 다른 조항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아 삭제하는 조항은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 투자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비용추계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업종 변경 지원사업 신설

나. 관련조문: 안 제25조의3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5차년도 (2030)	합계
계	-	30	30	30	30	120
도비	-	-	-	-	-	-
군비	-	30	30	30	30	120

3. 관련 의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산업 진출, 사업 다각화 및 생산품목 변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에 필요한 용역비 일부 지원

: 연간 30백만원(군비 100%)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김 인 수

관련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28호, 2026. 2. 5.,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2. 30.] [경상남도조례 제5984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3., 2021.9.30., 2023.3.30., 2025.12.30.>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도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도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다.
6.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8. “전략산업”이란「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다.
9.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0.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5.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16.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17.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18. “미래첨단산업”이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지식·기술 집약적 산업을 말한다.

19.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인을 말한다.

제4조(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기업, 도내 신·증설투자기업, 도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9.30., 2025.12.30.>

제5조(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1.3.>

제5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3., 2023.3.30.>

② 제1항의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3., 2023.3.30.>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1.17.>

제9조(지원특례) ①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6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3., 2025.12.30.>

1.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개정 2019.1.3.>
2.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② 도지사가 선정한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 비율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30.>

③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은 투자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30.>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개정 2020.12.31.>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개정 2019.1.3.>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3.>

제32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9.1.3., 2023.3.30.>

1. 제6조의2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경우 그 선행투자가 정산을 완료하기 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1.3.>, <개정 2023.3.30., 2025.12.30.>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법제처 의견22-0364**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보조금 지출 대상,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지원 사업의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명칭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교육감이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출근거를 규정하려는 경우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닌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 **법제처 의견12-0058**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사용료나 수강료 등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거나, 사용료나 수강료 등 금액의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는 등 규칙으로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후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술적 사항이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입법형식을 규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되, 본질적인 사항은 조례로 그 대강을 규정하여 제3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징수할 수강료 등의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거나 금액의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한 후 위임한 경우라면 규칙으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16

Q: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A: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따라서 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음. 법률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질의제목 : 광주광역시 -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무기계약전환 규칙안」 관련)

관련문서 :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 - 2909(2011. 4. 15.)

1. 질의요지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데도 「광주광역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어도 상위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하생략~

의안번호 제2026 - 133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6. 10. 1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10. 13.

2. 제안이유

○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용보증재원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3. 주요내용

가.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나. 사 업 비 : 450백만원(군비)

(단위 : 백만원)

사업 기간	2026년 예산액	2027년 요구액	비 고
2027년	450	450	

다. 사업내용 :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 대출

- 출연금 4.5억원 × 15배 = 67.5억원

4. 부서의견

가. 대내외적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 소비위축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보증지원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함

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균형을 고려하여 동결함

5.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현황

다. 시군 출연금 관련 현황

라. 관련 공문

6. 검토의견

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본 출연안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군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2027년도 출연금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액과 동일함. 하지만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거창군에 6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한 상태임.

나. 주요 검토의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는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과 시·군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거창군의 최근 **5개년 출연금은 총 20억 5천만 원**이며,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총 70억 원**임.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재단이 금융기관에 대신 갚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단의 부담을 보여 줌.

○ 거창군의 **2026년 상반기 실적은 총보증공급 945건, 277억 원**(신규+기한연장 포함), **보증잔액 2,497건, 590억 원**이며, **대위변제 순증액은 58건, 9억 원**으로 기존 보증지원 한도까지 대출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확인됨. 이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재단은** 보증공급 실적, 보증잔액, 대위변제액,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및 사업체 수 등을 반영해 거창군의 **2027년도 출연 요청액을 6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군은 한정된 재원과 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과의 균형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한 4억 5천만 원을 편성 요구**할 계획임.

○ 재단 자료에 따르면 **거창군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 기준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 이상을 출연하면 보증운용배수 15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4억 5천만 원 출연 시 67억 5천만 원, 재단 요청액인 6억 원 출연 시 9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과 연계할 수 있어, 출

연금 1억 5천만원 증액에 따라 산식상 보증지원 규모는 22억 5천만 원 늘어남에 따라 **출연금 증액은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출연 규모는 보증지원 규모의 확대 가능성**뿐 아니라 **대위변제에 따른 재단의 부담과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위변제액은 소상공인의 상환 곤란과 재단의 부담을 보여 주는 지표인 만큼, 재단의 실제 회수액과 최종 손실 규모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종합적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보증 이용 실적과 금융지원 수요를 고려할 때 전년도와 동일한 4억 5천만원의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존 보증지원 한도까지 대출이 이루어져 온 점과 재단의 출연 요청액이 6억 원인 점을 고려하여, 보증지원 확대 효과와 군 재정 여건 등을 바탕으로 출연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붙임1 관계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도 및 시·군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6.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제6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붙임2 **출연기관 현황**

경남신용보증재단

<table>
<tr><td>설립근거</td><td colspan="4">지역신용보증재단법</td><td>전화번호: 1644-2900
홈페이지:www.gnsinbo.or.kr</td></tr>
<tr><td>주요연혁</td><td colspan="3">1996.06.05.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2000.03.20. 경남신용보증재단 전환</td><td>기관형태
(출자, 출연)</td><td>출연</td></tr>
<tr><td rowspan="2">인원현황
('25. 9. 30
현원기준)</td><td colspan="2">계</td><td colspan="2">정규직</td><td>비정규직</td></tr>
<tr><td colspan="2">128명</td><td colspan="2">116명 * 이사장 포함</td><td>12명</td></tr>
<tr><td rowspan="11">임 원
('26. 9.기준)</td><td>직 책
(직책명)</td><td>성 명
(익명처리)</td><td colspan="2">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td><td>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td></tr>
<tr><td>이사장</td><td>공석</td><td colspan="2">-</td><td>-</td></tr>
<tr><td>비상임이사</td><td>손**</td><td colspan="2">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td><td>'24.3.18~ (당연직)</td></tr>
<tr><td>〃</td><td>김**</td><td colspan="2">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td><td>'26.1.1~ (당연직)</td></tr>
<tr><td>〃</td><td>신**</td><td colspan="2">경남 소상공인연합회장</td><td>'22.9.1~'27.5.31</td></tr>
<tr><td>〃</td><td>이**</td><td colspan="2">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문관</td><td>'25.6.1~'27.5.31</td></tr>
<tr><td>〃</td><td>허**</td><td colspan="2">경남은행 부행장</td><td>'25.6.1~'27.5.31</td></tr>
<tr><td>〃</td><td>김**</td><td colspan="2">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td><td>'26.2.19~'27.5.31</td></tr>
<tr><td>노동이사</td><td>공**</td><td colspan="2">경남신용보증재단 구상권관리팀장</td><td>'25.6.1~'27.5.31</td></tr>
<tr><td>감사</td><td>김**</td><td colspan="2">다음회계사무소 이사</td><td>'24.9.1~'28.8.31</td></tr>
<tr><td>주요기능</td><td colspan="5">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td></tr>
<tr><td colspan="2">자본금
(단위:백만원)</td><td colspan="2">379,971
(직전연도말 기준)</td><td>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td><td>176,006
(직전연도말 기준)</td></tr>
<tr><td rowspan="4">최근 3년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td><td>연도</td><td>2023</td><td>2024</td><td>2025</td><td rowspan="4">재무현황
(백만원)
'25.12.31 기준</td><td>자산</td><td>482,213
(자산 총액)</td></tr>
<tr><td>예산액</td><td>462,427</td><td>522,827</td><td>574,156</td><td>부채</td><td>102,242
(부채 총액)</td></tr>
<tr><td>지자체
지원액*</td><td>16,050</td><td>16,350</td><td>17,900</td><td>자본</td><td>379,971
(자본금 총액)</td></tr>
<tr><td rowspan="2">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6.9. 기준</td><td colspan="3">총수익</td><td>총비용</td><td>당기순이익</td></tr>
<tr><td colspan="3">43,371</td><td>80,835</td><td>△37,464</td></tr>
</table>

붙임3 시군 출연금 관련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26. 6월 기준)

구분	소상공인('23년)		보증잔액		시·군 출연금			
	사업체	비중	금액	비중	'25년 실적	'26년 요청	'26년 실적(추정*)	'27년 요청
합 계	**490,268**	**100%**	**27,225**	**100%**	**157**	**212**	**161.5**	**280**
창원시	139006	28.5%	8130	29.8%	32	63	40*	82.5
진주시	50040	10.2%	2949	10.8%	20	20	20	29
통영시	21170	4.3%	1176	4.3%	6	8.5	6	11
사천시	16834	3.4%	790	2.9%	7	7	7	7.5
김해시	83632	17.1%	4410	16.2%	20	32	20	46.5
밀양시	16527	3.4%	917	3.4%	8	8	6	8.5
거제시	31966	6.5%	2119	7.8%	20	20	20	23
양산시	54060	11.0%	3060	11.2%	10	20	10	33
의령군	3629	0.7%	179	0.7%	2	2	2	2
함안군	12709	2.6%	807	3.0%	6	6.5	6	9
창녕군	8286	1.7%	384	1.4%	3.5	4	3.5	4
고성군	8391	1.7%	351	1.3%	3.5	3.5	3.5	4
남해군	7859	1.6%	320	1.2%	5	3	3	3.5
하동군	7767	1.6%	283	1.0%	3	3	3	3
산청군	6042	1.2%	293	1.1%	2	2.5	2.5	2.5
함양군	5960	1.2%	224	0.8%	2.5	2.5	2.5	2.5
거창군	**9949**	**2.0%**	**590**	**2.2%**	**4.5**	**4.5**	**4.5**	**6**
합천군	6441	1.3%	243	0.9%	2	2	2	2.5

○ 소상공인 수 (시)**창원>김해>양산>진주>거제**>통영>사천>밀양
(군)함안>**거창**>고성>창녕>남해>하동>합천>산청>함양>의령

○ 소상공인 수 대비 출연금 규모 (시)**거제>양산>창원>진주>김해**>통영>밀양>사천
(군)함안>거창>의령>창녕>고성>남해>함양>산청>합천>하동

*요청 : 총보증공급(25%), 보증잔액(30%), 대위변제(30%), 재정자립도(5%), 지역내총생산(5%), 사업체수(5%)

붙임4 **관련 공문**

"전국 최고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솔루션 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수신자 거창군수(경제기업과장)

(경유)

제목 2027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거창군)

1. 거창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경영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기관입니다.

3.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몰려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출연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7년 거창군 출연금 협조 요청 1부. 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장 조원호 부장 김지근 이사장 직무대행 08/25 박상진

협조자

시행 경영기획 2026-999 (2026. 8. 25.) 접수 ()

우 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4층(창원컨벤션센터) / https://gnsinbo.or.kr/

전화 055)715-5148 / 전송 055)717-0039 / cwonho@gnsinbo.or.kr / 공개

2027년 거창군 출연금 협조요청

❑ 출연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자체 및 금융회사, 기업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 정부출연금, 도·시군 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기타 기관·단체 출연금, 보증료 등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행정지원)

* 도지사는 안정적 재단 운영을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을 요청할 수 있음

❑ 재단 현황

❍ 신용보증 현황

- '26년 말 **추정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 **7.06**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 예상

구 분	보증잔액	출연금액	대위변제순증액	당기순손실	기본재산	운용배수
'25년말	26,490억	622억	1,233억	375억	3,799억	6.97배
'26년말(추정)	27,700억	584억	1,083억	460억	3,924억	**7.06배**

❍ 대위변제 현황

- '26년 말 **대위변제율 3.91% 예상**(추정 대위변제순증 1,083억원 / 추정 보증잔액 27,700억원)

* 최근 3개년 대위변제율 추이 : ('23) 4.01% ('24) 6.10% ('25) 4.66%

❑ 거창군 주요실적 현황

구 분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대위변제*** 순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6년 상반기 실적	945건	277억원	2,497건	590억원	58건	9억원

* 총 보증공급 : 신규보증, 기한연장, 기보증회수보증(대환보증)을 모두 포함한 실적

** 보 증 잔 액 : 기준일(26.06.30.) 현재 재단을 이용중인 건수 및 금액

*** 대 위 변 제 : 고객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재단이 채권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
(대위변제 순증 = 대위변제 발생 – 대위변제 회수)

○ '25년 신규보증지원 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신규보증 1억원 당	**1.9억원**	**0.9억원**	**1.7명**	**0.7명**

○ '25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대비 보증대출의 금리 절감효과

구분	제1금융권 대비	제2금융권 대비
총 금융비용 절감효과	**77.7억원**	**856.5억원**

* 출처 :「2025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27년 보증운용 방향 [정책자금 규모 유지 위한 운용배수 적용]

❍ (운용배수) 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유지 위해 **'27년 출연요청액 충족시 운용배수 15배 적용(미달시 12배 적용)**

[운용배수 차등 적용 시스템]

구 분	'27년 출연요청액 미달시	'27년 출연요청액 충족시
운용배수	출연액의 12배 적용	출연액의 15배 적용

- 단,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6년 既출연금 이상 충족시 운용배수 15배 적용

* (인구감소)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인구관심) 사천, 통영

❍ (한도배분)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 지역별 **출연액 비례하여 보증한도 배분**

- 도자금 및 특례보증 한도배분시 출연규모 등을 감안 지역별 배분

❍ (인센티브) 시·군별 재단 출연 인센티브 강화

- 출연 우수 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금액 한도 우대(금융인센티브) 및 재단 컨설팅 10% 적극 지원(비금융인센티브)
- 道 정책자금 보증한도 배정시 시·군별 출연 비중 점진적 확대

* ('25년) 업체수 80% + 출연비중 20%(시행중) → ('26년) 출연비중 25% → ('27년) 출연비중 30%

❑ 거창군 출연요청액 : 최소 6억원

❍ (출연배분) 배분항목을 6개로 세분화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

구 분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대위변제	재정자립도	GRDP	사업체수
비 율	25%	30%	30%	5%	5%	5%

❍ 거창군 최근 5개년 출연 및 대위변제 현황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상반기	합계
출연금액	3억원	4억원	4.5억원	4.5억원	4.5억원	20.5억원
대위변제액	4억원	16억원	25억원	16억원	9억원	70억원

❍ **출연금 증액요청 배경**(정부「**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26.6.19) 시행**」)

- 재보증제도 개편 등 신용보증 공급환경 변화로 지역신보 재정기반 위축 예상
 -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하향에 따른 **출연금 감소**(0.07%→0.05%)
 - 재보증비율 **축소**(50%→30%), 재보증 **미가입**(금융회사 출연부 보증)에 따른 재단 **손실부담 증가**

[재보증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재보증기관)가 재보증함으로써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 재보증비율만큼 보전받는 제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정적 공급 위한 출연요청액 상향 {4.5억원(26년도) → 6억원(27년도)}

의안번호 제2026 - 124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6. 10. 1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10. 13.

2. 제안이유

○ 노인복지사업 및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3조)

1) 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2,652,738천원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1.~10.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사업과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안 제10조의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변경하는 것임.

나. 주요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을 존속기한 이후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법정 연장기간에 부합함.

○ 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립·운용하는 기금으로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설·장비 지원, 참여자 교육,

전문상담 및 사업자금 융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노인복지계정은 사회봉사활동비와 경로당 긴급 보수비 등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일반회계로 가능한 사업**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제4호에서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용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0조의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 근거와 자활지원 기능을 고려할 때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사업의 반복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금의 목적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붙임 **비용추계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노인복지 증진 사업과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사업 추진

나. 관련조문: 노인복지계정의 용도(안 제5조), 자활계정의 용도(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7년)	2차연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세입	기금	61	61	61	61	61	305
세출		42	42	42	42	42	210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세입: 노인복지기금 26백만원, 자활기금 35백만원

2. 세출: 42백만원

가. 노인복지 사업 지원 3건, 26백만원

1) 사회 봉사활동비 지원: 10백만원

2) 경로당 긴급 보수 지원: 10백만원

3) 사회봉사활동 평가 우수분회 활동비 지원: 6백만원

나. 자활지원 사업 지원 3건, 16백만원

1) 자립역량 교육지원: 4백만원

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환경개선: 5백만원

3) 경남자활 가족한마당 행사지원: 7백만원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6. 4. 9.] [법률 제21542호, 2026.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이하 “노인복지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지원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
3.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지원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지원
5.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노인 관련 단체로 한다.

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란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그 밖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2021.12.29.)

③ 자활계정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
 가.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장: 5천만원
 나.개인: 2천만원
2. 융자금 대부이율: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연 4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질의제목: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 2002(2017.7.20.)**

1.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

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

2. 의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이하 “대전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대전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전시조례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공포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산정되어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조례·규칙의 시행일은 제정·개정된 조례·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201. 참조). 대전시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의 효과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점이 대전시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전시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개정조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포·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7. 5. 18. 의견제시 17-0101 참조), 만약 대전시조례안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대전시조례가 사실상 2020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P28

1. 어려운 한자어

바. 한자를 같이 쓰기: ~ 한글표기만으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의안번호 제2026 - 125호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6. 10. 1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10. 13.

2.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정(2025. 12. 9.) 내용과 지역 통합돌봄제도 안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반영·정비하여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같이 규율하고 있음을 명시함(안 제1조)

나. 통합지원 사업에 돌봄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을 신설함(안 제5조)

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설함(안 제5조의2)

라. 통합지원협의체 정비함(안 제8조)

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정비함(안 제7조·제10조·제12조)

1)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전담조직: 법 시행규칙 제9조·제21조

2) 사무의 위탁: 법 시행령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867백만원 확보(국도군비 매칭)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2.~10.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라 거창군의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기존 돌봄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지원사업 신설(안 제5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통합지원회의 구성 변경(안 제7조), 통합지원협의체 운영방식 정비(안 제8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및 필요도 조사·판정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및 제12조) 등임.

나. 주요 조항별 검토의견

○ 안 제5조의2는 통합지원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 방법 등을 포함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함.

○ 안 제10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본청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통합지원 창구 설치·운영 규정은 삭제되나 **담당 인력 1명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는 돌봄 필요도 조사 및 판정 관련 사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비용추계서상 일부 연도의 총사업비와 재원별 부담액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재원별 부담액을 재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시행에 따라 거창군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비용추계서**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통합돌봄사업 추진

나. 관련 조문

1) 통합지원 사업 등(안 제5조)

2) 통합지원회의(안 제7조)

3) 통합지원협의체(안 제8조)

4)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안 제10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 구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합계
합계	867	1,181	1,300	1,420	1,540	6,308
국비	434	591	650	710	770	3,155
도비	114	150	165	180	195	804
군비	320	441	485	530	575	2,351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2026년 기준

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2026. 3. 27. 법 시행): 760백만원

나. 통합돌봄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07백만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관련법령 발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군・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정보분석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현황
3.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일상생활·사회활동 수행능력,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4.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통합지원에 대한 욕구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정된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 평가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연계와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법 및 제4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점검과 변경·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조정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면·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홍보 및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유형 분석
3.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조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조사기준 개발
4. 제12조의 종합판정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7.] [대통령령 제35897호, 2025. 12. 9., 제정]

제5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의 신청을 받거나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1. 노쇠등으로 인한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2. 질병 여부 등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3. 영양 상태
4. 주거환경
5. 그 밖에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종합판정에 필요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3. 27.] [보건복지부령 제1161호, 2026. 3. 20., 일부개정]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신청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말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시·군·구(법 제21조에 따른 전담조직 등을 포함한다)의 업무담당자
2. 관할 보건소 및 읍·면·동의 업무담당자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4.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를 위한 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의안번호 제2026 - 126호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6. 10. 1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10. 13.

2. 제안이유

○ 맞벌이가정 등 방학 중 돌봄 공백으로 인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등을 급식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급식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기준 명확화 및 범위 확대함(안 제2조)

1) 결식우려 기준 구체화

2) 급식지원 대상자 확대

가) 차상위계층 아동

나) 방학 중 맞벌이가구 등의 아동

다) 급식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학교 재학생 및 외국 국적 아동

나.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절차 현행화(안 제6조)

다. 법령 재기재 사항 등 정비함(안 제2조·제3조·제16조)

1) 조례로 위임한 법조문 등으로 인용조문 정비

2) 「지방자치법」 제29조 재기재에 해당하는 시행규칙 조문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 50,5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15.~10.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11조)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학 중 **돌봄 공백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급식지원 대상 및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급식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 아동 및 방학 중 맞벌이가구 등의 아동을 추가하고, **18세 이상 학교 재학생과 외국 국적 아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안 제2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절차 정비(안 제6조), 위원 해촉 사유 추가(안 제11조), 시행규칙 관련 조항 삭제(안 제16조) 등임.

나. 주요 조항별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차상위계층 아동과 방학 중 맞벌이가구 등의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18세 이상 학교 재학생 및 외국

국적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급식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측면에서 타당함.

○ 안 제6조는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대상자 확인 및 결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임.

○ 안 제11조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를 위원 해촉 사유에 추가하는 것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 안 제16조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다. 종합 검토 결과

○ 사단법인 한국결식아동지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식 우려 아동수는 무려 33만 여명**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높아진 물가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급식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아동 급식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비용추계서**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방학 중 맞벌이 등 돌봄공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나. 관련조문: 급식지원 대상자(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기간: 2027년~2031년

2) 비용: 50,500천원

3) 대상: 방학 중 맞벌이 등 돌봄 공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 연도 (2027년)	2차 연도 (2028년)	3차 연도 (2029년)	4차 연도 (2030년)	5차 연도 (2031년)	합계
군비	50,500	50,500	50,500	50,500	50,500	252,500

Ⅱ. 2027년 비용 추계

1. 총예산: 50,500천원

2. 여름·겨울방학 도시락

가. 지원: 7천원(1식)×100명×50일 = 35,000천원

나. 자부담: 1천원(1식) 별도

3. 자원봉사자 수당: 15천원×50일×20명 = 15,000천원

4. 자원봉사자 간담회: 회의 물품, 식대 등 = 500천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관련법령 발췌

□「아동복지법」

[시행 2026. 9. 15.] [법률 제21936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6. 2. 3.>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8의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58호, 2026. 8. 4., 일부개정]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3조(지원 대상) 급식 지원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7.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맞벌이가정 등 방학 중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0.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시·군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1.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12.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16

Q: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A: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따라서 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음. 법률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의안번호 제2026 - 1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6. 10. 1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10. 13.

2. 제안이유

○ 지방세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에 대해 202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1)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2) 기 관: 한국지방세연구원(이사장 정종섭)

3) 내 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나. 출연금액: 4,191천원

1) 2027년 예산편성 요구액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출연금	4,063	**4,191**	4,191	-	-	4,191	

※ 산출기초 : '25년 결산 보통세 41,905,756천원 × 1.0/10,000

다. 부서의견

1)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

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나. 출연기관 현황: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41,905,756천 원에 법정 출연율 1만분의 1.0을 적용하여 2027년도 출연금 4,191천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전년도 출연금 4,063천 원보다 128천 원 증액된 금액임.

나. 주요사항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법정 출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2025년도 결산액 41,905,756천 원에 출연율 1만분의 1.0을 적용한 4,191천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출방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덧붙여, 출연의 필요성과 별개로 **연구원의 정책연구 및 지원기능이 거창군의 세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세원 발굴과 과세자료 분석,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 검토,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전문 자문 및 담당 공무원 교육 등 관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본 출연안은 법령에 따른 출연 의무와 산출기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25년도말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 출연율 인하 예정 (현행)1만분의 1.2 → (개정)1만분의 1.0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붙임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table>
<tr><td>설립근거</td><td colspan="3">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td><td>02-2071-2748
www.kilf.re.kr</td></tr>
<tr><td>주요연혁</td><td colspan="2">-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td><td>기관형태(출자, 출연)</td><td>- 출연</td></tr>
<tr><td>인원현황
(2026년
8월 기준)</td><td colspan="4">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계</th><th rowspan="2">원장</th><th colspan="4">연구관련직</th><th rowspan="2">사무직
시설직</th></tr>
<tr><th>연구위원직</th><th>연구원직</th><th>조사분석직</th><th>전문직 등</th></tr>
<tr><td>정 원</td><td>78</td><td>1</td><td>24</td><td>18</td><td>8</td><td>10</td><td>17</td></tr>
<tr><td>현 원</td><td>61</td><td>1</td><td>16</td><td>10</td><td>8</td><td>9</td><td>17</td></tr>
<tr><td>총인원</td><td>91</td><td colspan="5">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 12, 위촉직 연구·전문·행정원 등 18)</td></tr>
</table>
</td></tr>
<tr><td rowspan="15">임 원
(2026년
8월 기준)</td><td>직 책
(직책명)</td><td>성 명</td><td>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td><td>비 고</td></tr>
<tr><td>이 사 장</td><td>정 종 섭</td><td>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td><td>2024.2.2. ~
2027.2.1.</td></tr>
<tr><td>부이사장</td><td>성 낙 인</td><td>경상남도 창녕군수</td><td>2026.3.13. ~
2027.3.12.</td></tr>
<tr><td>이 사</td><td>신 승 근</td><td>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td><td>당 연 직</td></tr>
<tr><td>이 사</td><td>이 현 정</td><td>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td><td>당 연 직</td></tr>
<tr><td>이 사</td><td>김 동 현</td><td>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정책관</td><td>2025.8.30. ~
2026.8.29.</td></tr>
<tr><td>이 사</td><td>이 상 호</td><td>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td><td>2025.8.30. ~
2026.8.29.</td></tr>
<tr><td>이 사</td><td>심 원 섭</td><td>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td><td>2025.8.30. ~
2026.8.29.</td></tr>
<tr><td>이 사</td><td>신 종 우</td><td>경상남도 행정국장</td><td>2025.8.30. ~
2026.8.29.</td></tr>
<tr><td>이 사</td><td>김 성 수</td><td>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td><td>2026.3.13. ~
2027.3.12.</td></tr>
<tr><td>이 사</td><td>김 병 내</td><td>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td><td>2026.3.13. ~
2027.3.12.</td></tr>
<tr><td>이 사</td><td>조 규 일</td><td>경상남도 진주시장</td><td>2026.3.13. ~
2027.3.12.</td></tr>
<tr><td>이 사</td><td>이 상 범</td><td>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td><td>2025.8.30. ~
2027.8.29.</td></tr>
<tr><td>감 사</td><td>김 정 선</td><td>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td><td>당 연 직</td></tr>
<tr><td>감 사</td><td>김 옥 흔</td><td>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td><td>2026.3.5. ~
2028.3.4.</td></tr>
<tr><td>주요기능</td><td colspan="4">-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td></tr>
<tr><td colspan="2">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td><td colspan="2">(직전연도말 기준)</td><td>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td><td>139,826
('11~'25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td></tr>
<tr><td rowspan="3">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td><td>연도</td><td>2024</td><td>2025</td><td>2026</td><td rowspan="3">재무현황
(백만원)
'25.12.31기준</td><td>자산</td><td>28,531</td></tr>
<tr><td>예산액</td><td>17,813</td><td>17,467</td><td>16,757</td><td>부채</td><td>1,583</td></tr>
<tr><td>지자체
지원액</td><td>13,079</td><td>12,415</td><td>10,470</td><td>자본</td><td>26,948</td></tr>
<tr><td rowspan="2">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5.12.31기준</td><td colspan="3">총수익</td><td>총비용</td><td>당기순이익</td></tr>
<tr><td colspan="3">17,600</td><td>16,554</td><td>1,379</td></tr>
</table>